##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조정식・민병덕・정을호

백승아 · 정성호 · 부승찬

황운하 · 서미화 · 김성환

문진석 • 이기헌 • 염태영

김재원 · 정준호 · 이병진

윤종군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·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,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.

그런데,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·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,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.

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·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 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요청을 받은 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##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후단 중 "한다"를 "하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자료의 요청) 처장은 의장	제10조(자료의 요청)
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	
밖의 기관・단체에 대하여 직	
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	
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	
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	
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<u>한다</u> .	
	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
	률」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
	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